

의안번호	2202429
의 퇴 인	최수진 의원
회 답 일	2024. 6. 21.
추 계 번호	24A0585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·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유형에 ‘용자’가 추가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 법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유형에 출연과 보조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용자를 추가하는 내용임
 -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출연 또는 보조사업을 용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개정안이 현행 용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라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으로 인해 추가로 용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, 현행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총 181개 사업에 4조 8,181억원 규모임
 -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은 대부분 출연 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며, 융자사업은 2024년에 처음 도입됨
 - － 융자사업으로는 “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”가 있으며, 2024년 예산은 900억원 규모임

[표 1] 현행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현황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
(단위: 억원)

사업지원형태	2021결산	2022결산	2023결산	2024예산
출연	36,379	41,249	46,758	47,028
보조	—	53	80	123
이차보전	—	—	—	130
융자	—	—	—	900
총합계	36,379	41,302	46,838	48,181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- 개정안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할 때 이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융자 형태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요와 이에 대한 예산 지원(편성) 등을 확정하여야 하는데,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